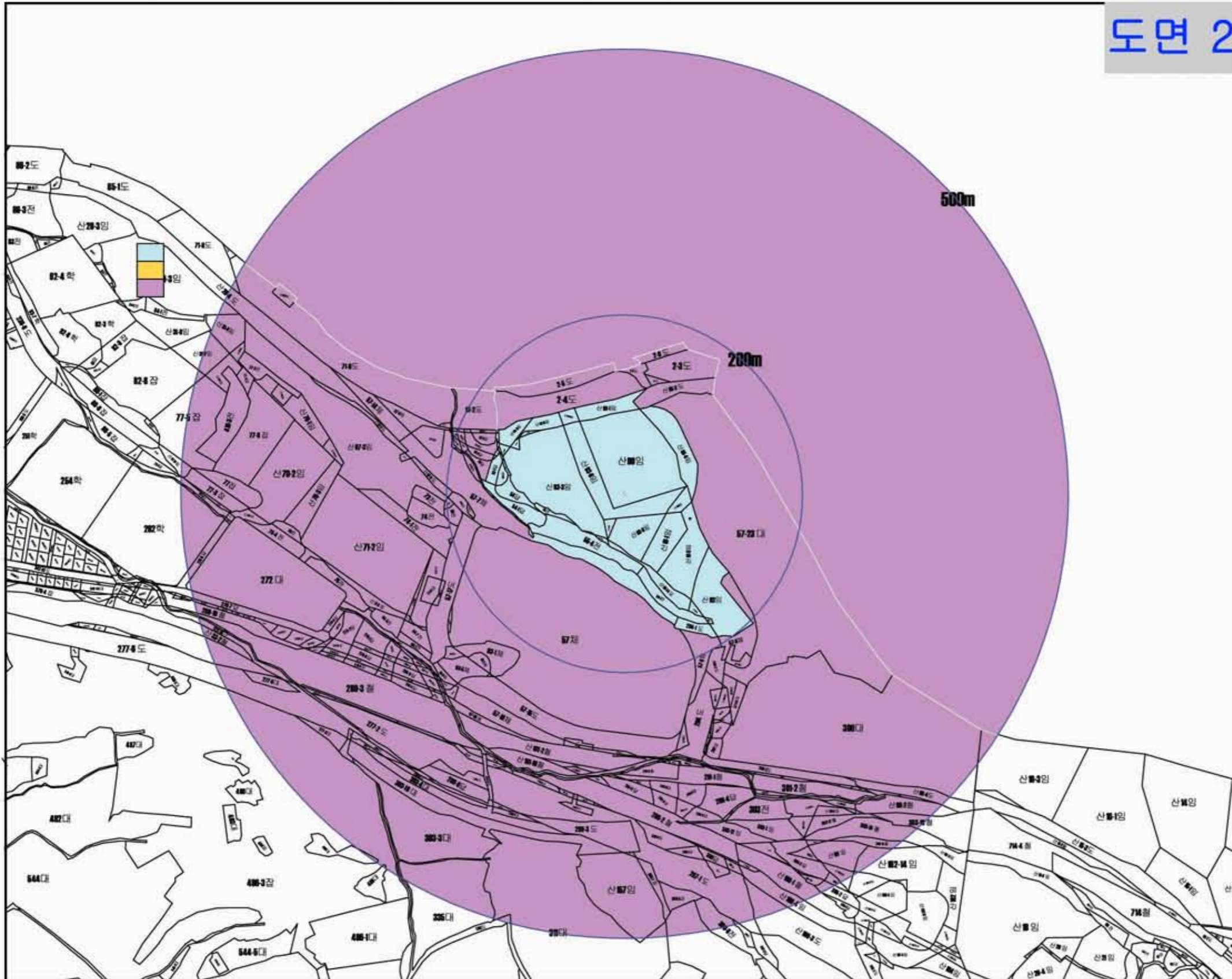


# 도면 2



## 대구광역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

- 대상문화재
  - 영영축성비【유형문화재 제4호】
  - 대구부수성비【유형문화재 제5호】
  - 위치: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산80

- 문화재구역
  - :문화재구역

## ■ 구역별 허용기준

항목	허용 기준		
	평지붕	경사지붕(20%이상)	용도
1구역	• 원지형 보존		
2구역	•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구광역시장 허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조치(원형보존,이전복원, 전문가 입회조사,매장문화재 발굴조사)</li> <li>-문화재 주변 역사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원지형 절토 및 성토 행위</li> <li>-유적경비 및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</li> <li>-진동배출시설, 대기오염배출시설, 폐기물처리시설, 위험물제조 시설, 분뇨처리시설 설치</li> <li>-도로, 교량 등 이외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</li> </ul> </li> <li>•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적정한 건축물 높이를 아래와 같이 적용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기준 초과시 "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영향 여부 검토"의견에 따라 결정함</li> <li>-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,계단탑, 승강기탑, 양부 기타 이외 유사한 것 포함</li> <li>-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, 증축, 재축, 개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</li> <li>시설, 분뇨처리시설 설치</li> <li>-도로, 교량 등 이외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</li> </ul> </li> </ul>		

■ 축척

A3 : 1/5,000